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안내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24.4.19.(금) >

1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 지정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

- 1 (보건소) 기존 담당기관(조제기관) 재지정 안내(~4.19.) 및 신청서 접수(~4.24.)
- 2 (담당기관) 담당기관 신청서(동의서 포함) 보건소 제출(4.22.~4.24.)
- 3 (보건소·질병청) 담당기관 지정서 배부(~4.25.) 및 담당기관 목록 질병청 통보(~4.25.)

- **(지정요건)** 기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투약 담당기관 중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등 조건에 동의하는 약국·의료기관 대상 재지정 가능
- **(지정절차)** ①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신청(약국, 의료기관→관할 보건소) → ②신청기관 요건 확인 및 담당기관 지정 통보 및 지정서 교부(보건소→담당기관) → ③지정기관 목록 및 서류제출(보건소→시·도→질병청)

- **(베클루리주)** 기존 공급 기관 대상 신규 지정 필요하며, “지정 신청서(서식1)”와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서식 2)”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 공급 중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 취소신청서 작성 불필요하며, “현장보유 물량확인서(서식4)” 제출 및 기관 보유 물량은 시·도 공급거점병원에 반납

- **(먹는치료제)** 기존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은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서식2) 제출 시 재지정되는 것으로 같음(신규 지정 신청서·지정서 불필요)

* 공급 중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의 지정 취소 신청서(서식1), 현장보유물량확인서(서식4) 제출 및 보건소의 취소조치 필요, 보유물량은 인근기관으로 전배 원칙

※ ①보건소는 지정기관 목록(엑셀)을 4.25일까지 질병청으로 제출하고, ② 지정 서류(신청서 및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PDF 파일, 서식 1,2) 및 현장보유 물량 확인서(엑셀)는 5.10일까지 사후 제출 가능

※ 기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기관 중 재지정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신청서, 동의서 등) 미제출 기관은 보건소에서 반드시 의사확인 및 지정·지정취소 관련 행정처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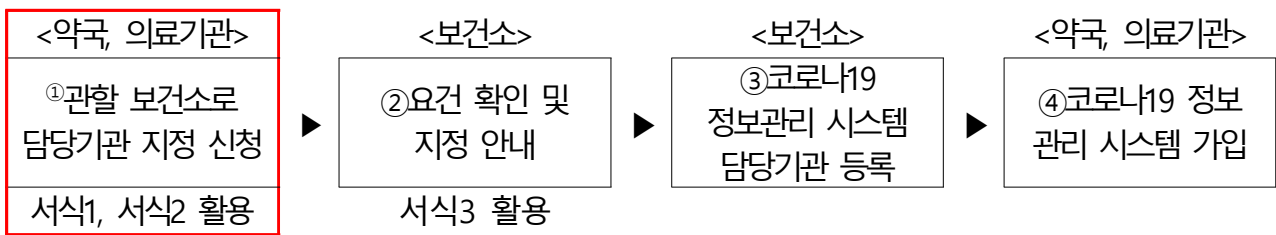
※ 금번 지정은 기존 코로나19 공급기관((구)먹는치료제 조제기관, 베클루리주 공급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기관 추가 지정]은 필요시 추후 안내 예정

② 담당기관 조치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재고관리시스템 등록)** 신규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절차와 함께 별도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內 재고관리시스템에 기관 등록 절차 필요

* (절차) 담당기관 신청 → 보건소 등록(베클루리주 신규 등록 담당기관만 해당)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절차 >



- **(시스템 조치사항)** 5.1일부터 입력된 사용량은 정산에 반영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당일 사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을 반드시 당일 시스템에 입력 완료 필요

※ 주사제(베클루리주)는 5.1일부터 시스템으로 관리, 최초 시스템 등록시점에 보유중인 치료제 수량은 '입고량'에 입력하고 비고란에 사유 기재(시스템 전환에 따른 재고량 입력)(~4.30일까지)

- **(기타 조치사항)**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4.30일 24시 기준으로, 기관에서 보유 중인 치료제 재고물량을 확인하여 증빙 서류* 별도 보관(서식 4)하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 서류 등 확인(5.1~5.10., 필요시 현장방문)

* '24.4.30일 24시 기준, ①재고관리시스템 內 재고량 입력 사진 1장, ②보유 중인 치료제 재고량 실제 사진 1장 (추후 본인부담금 정산 절차에서 증빙자료로 활용)

- **(지정 취소기관 조치)** ① 담당기관 지정 취소 요청(담당기관 → 관할 보건소) → ② 지정 취소 통보(관할 보건소 → 해당기관) → ③ 재고관리시스템 조치 및 보유물량 전배 조치*(해당기관, 관할 보건소 확인) → ④ 재고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취소, 담당기관 목록 현행화 → ④ 담당기관 목록 통보(보건소 → 시도 → 질병청)

* 담당기관 지정 취소로 인해 재고물량 전배 필요시, ①인근 기관으로 자율 전배 ②자율 전배가 어려울 경우 관할 보건소 통해 전배 ③기간 내 전배가 불가능한 물량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하다가 추후 신규 기관 지정시 전배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 시 제출 서류 >

구분	재 지정기관			신규 지정기관			취소기관		
	신청서	동의서	보유물량 확인서	신규 신청서	동의서	보유물량 확인서	취소 신청서	동의서	보유물량 확인서
베클루리주	해당없음			○	○	○*	해당없음	×	○
팍스로비드	×	○	○	추후 안내	추후 안내	×	○	×	○
라게브리오	×	○	○	추후 안내	추후 안내	×	○	×	○

* 베클루리주 담당기관(기 공급기관)은 보유물량 확인서(서식4)의 ①재고량 실제 사진 1장, ②재고관리시스템에 입고량을 신규로 입력한 사진 1장 보유 필요

3 본인부담금 부과 업무 세부 절차

- **(추진방향)** 정부구매 및 정부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 **(부과금액)** 5만원(약제 수령 및 주사제 투약 시 1명분당 1회 지불)
 - * (1명분 기준) 팍스로비드(5일치/30정), 라게브리오(5일치/40캡슐), 베클루리주 (중증 5일치/6vial, 경·중등증 3일치/4vial)
 - 단,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지원 유지(붙임6 참조)
 - *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본인부담금 경감·면제 기준을 차용하되, 국민 혼란 최소화 및 보장 강화를 위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차등 기준 없이 일괄 무상지원
 - **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종별 확인 가능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변경 사항 >

약품명	대상자		현행	변경
베클루리주 (입원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0원	5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0원(무상)
		2종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0원	5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0원(무상)
		2종		

- **(사전 준비)**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 등 진행 (1차: 4.17., 2차: 4.25. 예정*)

* 사전설명회(4.25. 예정)는 담당기관·지자체 대상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사용 안내서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예정임. 공문 등은 추후 발송 예정이므로, 각 시도 및 보건소에서는 기 운영 중인 담당기관 비상연락망 사전 점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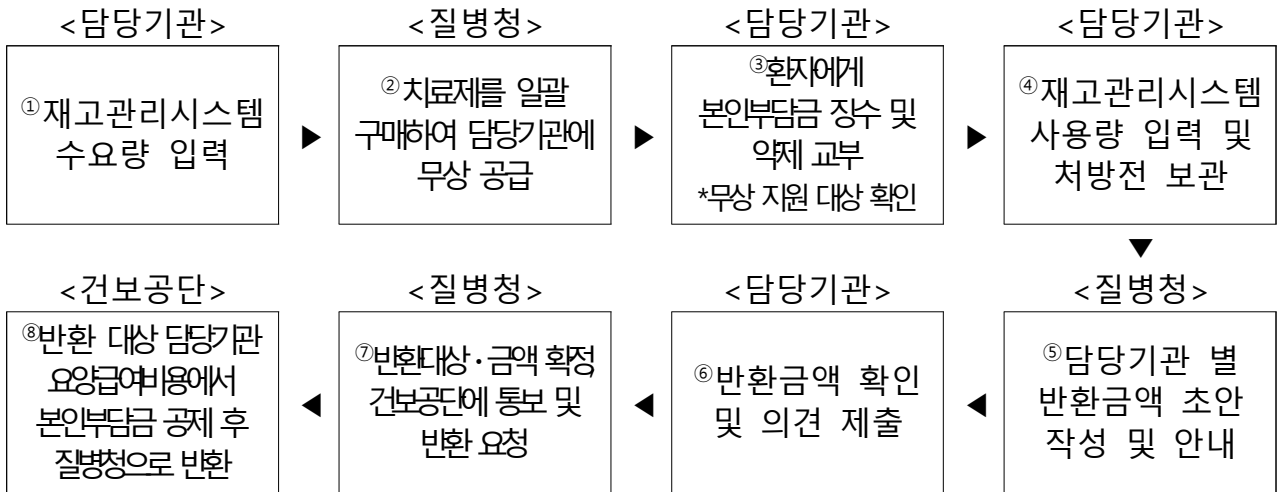
< 기관별 역할 >

기관별	협조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주체로서의 역할
질병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관리 ■ 담당기관에 사전 안내(의견청취) ■ 반환대상금액 확정 후 건보공단에 통지
건보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청 요청에 따라 담당기관 검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 공제, 미반환금 조치 진행 ■ 반환완료 후 질병청에 지급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 업무 총괄 	-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본인부담금 반납 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관리 - 담당기관 지정 총괄 및 목록 관리 - 기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사항
담당기관 (처방기관, 조제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역할 수행 -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및 조제 * 처방기관은 처방 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발생 안내 및 복용 의사 반드시 사전 확인 - 본인부담금 징수 및 반납(수수료* 등 제공)

* 본인부담금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 고려하여 2%(1천원)은 반환금액에서 제외

- **(본인부담금 시행)** 치료제 조제·투약시 본인부담금 수령(5.1. 00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제공
 - ①정부(질병청)에서 담당기관에 치료제 무상공급 → ②담당기관에서 의료보장 종별 확인 → ③환자는 유상 또는 무상 수령 → ③담당기관에서는 재고관리시스템에 사용량 입력(유·무상 지원 내역 기재, 붙임6) → ④건보공단 정산 시스템에서 사후 정산
- **(담당기관 본인부담금 정산)** 분기별 정산 진행(1차: 7월, 5~6월분, 2차: 10월, 7~9월분, 3차: '25.1월, 10~12월분), 정산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정산 절차 >



4] 향후 추진일정

- 담당기관 지정 신청(~4.24., 담당기관) 및 지정 목록 통보(4.25., 보건소·시도)
-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 개정 배포(~4.26.)
- 담당기관·지자체·보건소 대상 온라인 설명회(2차, 4.25. 예정)
- 담당기관 및 대국민용 홍보물(리플렛 등) 배포(4.4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시행(5.1.)

붙임1**[서식1]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약국·의료기관) 신청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신규/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취소			
(취소 신청 시)	운영 종료일	9999. 12. 31.		
기관 정보 (변경 신청 시 변경한 상태 반영 재작성)	기관명	○○○약국	요양기호	99999999
	주소	○○시 ○○구 ○○○○번길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시작일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공제(상계)등록 가능일자)	9999. 01. 01.	종료일	미정
	기관유형	<input type="checkbox"/> 처방기관 <input type="checkbox"/> 조제·투여기관		
	담당약품	<input type="checkbox"/> 팩스로비드 <input type="checkbox"/> 라게브리오 <input type="checkbox"/> 베클루리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해당)		
(담당기관) 작성자	성명 : _____ 팩스 : _____ 전화번호(핸드폰) : _____ 이메일 : _____			
<p>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① 시군구청장의 코로나19 치료제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 요구에 협조한다.</p> <p>② 기관의 변경·취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 기존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약국, 의료기관은 상기 신청서를 기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만 추가 제출할 수 있다.</p> <p>③ 코로나19 치료제 신청 및 처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사항을 준수한다.</p> <p>④ 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대신 징수하여 질병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공제(상계)하여 공단이 질병관리청에 반환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고 동의 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1부. 필수)</p> <p>※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미반납시 담당기관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시·군·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제1조	동의목적	<p>① 담당기관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공급받아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 환자로부터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 반환할 것을 동의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담당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가지급(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 처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용 등에서 가지급(조기지급)에서 제외 후 공제(상계)를 동의한다.</p> <p>② 질병관리청이 환자 본인에 대하여 갖는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하여, 담당기관에게 본인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하고, 담당기관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수령한 본인부담금을 질병관리청에게 반환하는 등 일체의 위임내용에 대해 당사자(담당기관-질병청) 합의한 바, 질병관리청이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관련 서류(통지서 등)를 제출하는데 동의한다.</p> <p>※ 담당기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약국, 의료기관)</p>
-----	------	---

제2조	“담당기관”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취급약제	<input type="checkbox"/> 팍스로비드 <input type="checkbox"/> 라게브리오 <input type="checkbox"/> 베클루리주(병원급 이상)
		주소(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		생년월일	
		대표자		면허번호	
		면허종별		재고관리시스템 [] 사 용 ※ 재고관리시스템 등록시 명칭 :	
		재고관리시스템			

제3조	담당기관 조건	별지 뒷면 참조
-----	---------	----------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담당기관 지정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기관은 본 동의서에 의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담당기관의 과실로 인해 무상공급 약제 관리 및 본인부담금 부과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담당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	--

제5조	동의기간	본 동의서는 동의일로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	------------------------------------

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공제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본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1부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시군구청장은 본 동의서를 담당기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다.

동의일자: 년 월 일

<담당기관>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 쪽)

지정번호
제 호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서

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 . . 부터

위 기관을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담당기관 조건 >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코로나19 치료제 신청 및 처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 시장·군수·구청장의 코로나19 치료제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 ③ 담당기관의 변경·취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치료제 공급을 신청하고, 실시간 사용내역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에 입력·등록(코로나19 치료제 조제료 입력 포함) 등 상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 ⑤ 담당기관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질병청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일체의 제반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5

[서식5] 담당기관 지정기관 목록(엑셀, 예시)

시도명	
담당자 연락처	

연번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기관 목록								
	신청 유형	보건소 담당자	담당기관 유형	요양기관 기호	담당기관 명	취급약제	일자 (동의/지정, 시작/종료)	주소	전화번호

□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대상**

-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대상 >

구분		내용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재해구호법), 노숙인 ▶ 다음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23.1.1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근로능력 유무 기준은 국민기초수급권자와 동일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23.1.1일 신규 수급권 신청자부터 적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 운영 절차

- ①정부가 제약사에게 일괄 구매하여 치료제 담당기관에 무상공급
→ ②담당기관에서 종별(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 확인 →
③환자는 무상 수령 → ③담당기관에서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무상
지원 내역 입력 → ④건보공단 정산 시스템에서 담당기관 요양
급여비용 미공제

< 재고관리시스템 사용량 입력 절차 >

기준일자	2024-03-20 ~ 2024-04-19	경구용치료제	팍스로비드_(30정)	국가보장정보 포함
사용기관		사군구	전체	

사용기관	경구용치료제코드	경구용치료제명	전일재고량	인고량	무상 사용량	유상 사용량	재고량	수요량	비용요청일자	결정방	결정일자	비고(작성요령 참고)
	648903670	팍스로비드_(30정)	36	0	2	0	34	0		0		김**311****27호, 이**247****3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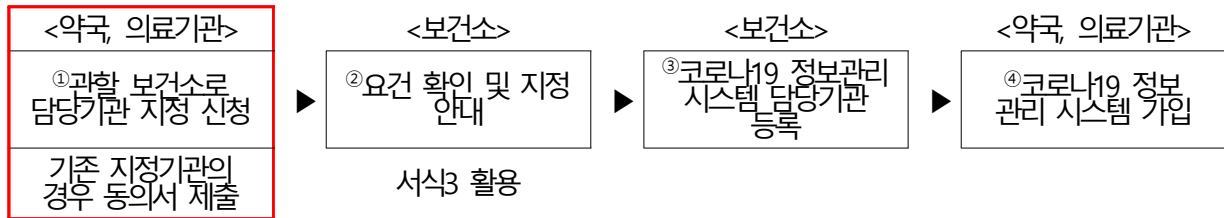
① (비고란 상세 정보) 무상지원 내역 입력

- ☞ 무상지원 대상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 작성 **必** (작성 예시: (5.1) 무상(1)/ 김**/ 311****/27호)
 - ▶ 유상: 종별이 국민건강보험, 기타에 해당하는 대상자, 본인부담금 부과 대상임
 - ▶ 무상: 종별이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대상자, 치료제 무상 지원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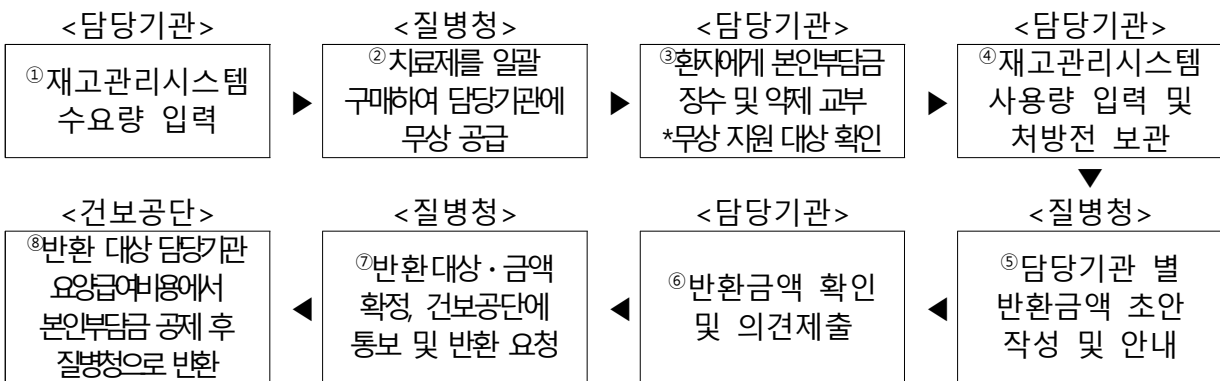
Q1) (운영 절차)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주요 운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담당기관 지정 절차



- 본인부담금 징수 운영 절차



Q2) (운영절차) 수요량은 보건소에서 신청하는건 동일한가요?

A2) 네, 기존과 동일합니다. 약국의 경우 보건소에서 약국 수요량을 취합하시어 약국 보유 재고 및 일주일간 사용량을 기반으로 조정하여 시스템 수요량 입력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시스템 수요량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Q3) (기관 지정) 본인부담금 부담금 기관 지정 시 기관별 해야하는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A3) 기관 별 해야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지정신청서 및 동의서 취합, 지정기관 목록 통지, 지정서 교부 및 전배 등
- 처방기관: 처방 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발생 안내 및 복용 의사 반드시 사전 확인
- 조제기관: 지정신청서 및 동의서 보건소 제출, 재고관리 시스템 사용량 입력(4.30.까지, 입력 못한 경우 추후 정산 시 이의신청 등 단계에서 증빙 필요) 등
- 요양병원: 담당기관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Q4) (기관 지정) 재지정 시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받아야 할까요?

A4)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보건소에서 우편, 팩스, 메일 등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원본, 복사본, PDF, 사진 등의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Q5) (기관 지정) 본인부담금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 재지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처방 및 조제를 못하도록 안내해야 하나요?

A5) 기존 지정기관의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투여 및 조제가 불가능하며,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을 완료하여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투여 및 조제가 가능합니다.

Q6) (기관 지정) 조제를 하지 않는 처방기관도 재지정이 필요한가요?

A6) 처방기관의 경우 금번 재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금번 재지정 대상은 기존에 베클루리주를 원내에서 투여하는 병원급의 의료기관 또는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를 조제하는 의료기관·약국입니다.(담당기관이라 칭함) 단,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투여·조제를 함께하는 경우 재지정이 필요합니다.

Q7) (기관 지정) 기존 조제기관 지정해제 없이 담당기관 지정 가능할까요?

A7) 기존 베클루리주 투여 기관 및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를 조제하는 기관의 경우 해제 없이 담당기관 재지정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지정해제가 필요합니다.

Q8) (기관 지정) 원내 주사제 투여, 원내 조제를 다 하는 기관은 서류를 2장씩 받으면 되나요?

A8) 1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동의서 서식에 담당약품(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를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있어 주사제 투여 및 먹는치료제 조제를 모두 하는 기관은 취급하고 있는 약제를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9) (기관 지정) 보건소에서 약제를 받았던 요양병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기존에 공급거점병원 혹은 보건소에서 약제(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를 공급 받았던 요양병원의 경우 금번 기관 지정 시 신규 지정(제출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이 필요하며, 담당기관 지정에 따른 치료제 신청 및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Q10) (기관 지정) 지정 취소되는 기관이 너무 많은 경우 신규 지정해도 되나요?

A10) 가급적 신규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 취소가 많이 인근에 담당기관이 없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규 지정이 가능합니다(신규기관 지정은 추후 안내예정).

Q11) (무상지원) 무상지원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1) 무상지원 유지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약품 조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전 처방전 확인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 후 징수 바랍니다. 만약 무상지원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통상적인 의약품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대상자에게 환불하고 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합니다.

Q12) (인센티브) 담당기관이 받는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 되나요?

A12)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공제 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49,000원 x 유상 사용량

Q13) (재고처리) 지정취소기관이 많을 경우 취소기관 보유 의약품 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13) 지정취소기관이 많아 취소기관에서 보유한 의약품 재고 수량이 많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하시다가 향후 신규 담당기관 지정시 전배할 수 있습니다.

Q14) (재고처리) 유통기한 만료 제품에 대해 폐기 시 불이익이 있나요?

A14) 유통기한 만료 제품 폐기시 행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코로나19 치료제는 고가의 제품이므로, 사전에 보건소를 통해 전배하여 폐기 물량을 최소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기 시 관할 보건소 보고 및 폐기 사유서(의료기관, 약국 기존 양식 사용 가능)를 작성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시스템) 무상지원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어떤 방식으로 입력해야 할까요?

A15) 무상지원의 경우 시스템에 아래와 같이 입력 바랍니다.

사용기관	경구용치료제코드	경구용치료제명	전일재고량	입고량	사용량	재고량	수량	비송요령일자	결정일자	결정일자	비고(의성요령 링크)
11100036	648903670	팍스로비드_(30정)	0	0	3		0				의성, 무상2 / 의양기관번호(교부번호) / 의양기관번호

① (비고란 상세 정보) 무상지원 내역 입력

- ☛ 무상지원 대상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 작성 必** (작성 예시: (5.1) 무상(1)/ 김**/ 311****/27호)
 - ▶ 유상: 종별이 국민건강보험, 기타에 해당하는 대상자, 본인부담금 부과 대상임
 - ▶ 무상: 종별이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 대상자, 치료제 무상 지원 대상임

Q16) (시스템) 보건소에서 취소기관 보유 재고 물량을 보관할 경우 재고관리시스템 등록은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A16) 보건소에서 취소기관 보유 재고 물량을 보관할 경우 기존 시스템의 전배 처리와 동일하게 재고관리시스템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예1) A약국에서 팍스로비도 6개를 보유하였으나 취소 기관이 되었을 경우

- ① A약국에서 재고관리시스템 내 경구용 치료제 사용관리 메뉴 접속
- ② 최근 A약국의 입고수량에서 6개를 감조정(당초 12개→수정 6개)
- ③ 비고란에 '0.0., 기관 취소로 인한 보건소 전배' 라고 작성 후 저장
- ④ 보건소에서 해당 물량을 수령하여 상태 확인
- ⑤ 보건소에서 재고관리시스템 내 경구용 치료제 사용관리 메뉴 접속
- ⑥ A약국 전배 수량에 대하여 입고량(6개) 입력 후 저장

예2) 보건소 보유 물량을 신규지정기관인 B약국으로 3개를 전배할 경우

- ① 보건소에서 재고관리시스템 내 경구용 치료제 사용관리 메뉴 접속
- ② 최근 보건소 입고수량에서 3개를 감조정(당초 24개→수정 21개)
- ③ 비고란에 '0.0., 신규기관지정으로 3개 B약국 전배'라고 작성 후 저장
- ④ B약국에서 재고관리시스템 내 경구용 치료제 사용관리 메뉴 접속
- ⑤ 보건소 전배 수량에 대하여 입고량(3개) 입력 후 저장

Q17) (시스템) 취소기관에 대한 재고관리시스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7) 취소기관의 경우 지정 해제 처리 전 반드시 재고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하며(A16 참고) 아래와 같은 단계로 보건소에서 재고관리시스템 지정 해제 처리 바랍니다.(상세 사용 안내서 Part2. 및 시스템 매뉴얼 참고)

- ① 재고관리시스템 내 경구용 치료제 기관관리 화면에서 취소 기관 조회
- ② 기관 히스토리 열의 보기 선택
- ③ 팝업창이 뜨면 담당기관 정보를 더블클릭하여 수정모드 활성화
- ④ 종료일자를 취소 지정일자로 수정하여 취소
- ⑤ 배송지 관리를 위하여 변경사항 보건소→시도(엑셀양식)→줄릭파마코리아(KRLogisticIT@zuelligpharma.com)로 공유

담당기관(약국, 의료기관) 안내사항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추어 5.1.(수)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를 시행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담당기관 재지정 신청(4.22~24.)

- (대상)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먹는치료제 및 주사제) 담당기관

기관 유형	지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기존 먹는치료제 조제기관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지정 유지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	동의서 제출시 지정신청한 것으로 같음
	지정 취소	담당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	기관 보유물량은 인근의 담당기관으로 전배처리
기존 베클루리주 공급기관	공급 유지	담당기관 지정 신청서(신규), 본인부담금 공제 등 동의서,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	
	공급 중단	현장 보유물량 확인서	기관 보유물량은 시·도 공급거점병원에 반납

2. 보유재고량 파악(4.30일 24시 기준)

- 4.30까지 치료제 사용량 파악 및 시스템 입력(사진 등 증빙 서류 별도 보관)

* (지정취소 및 공급중단기관) 현장보유물량확인서 작성, 보유물량 인근기관으로 전배 및 시도 공급거점병원에 반납

3. 본인부담금 부과(5.1.일 시행)

① 본인부담금 유/무상 대상자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수령 후 약제 교부

*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종별 확인 가능

- (유상) 5만원(1명분, 치료제 3종 동일 금액) 수령/ (무상) 무상 지원

대상자		현행	변경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0원	5만원(유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원(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0원	0원(무상)
	2종		

② 유상/무상 구분하여 처방전 별도보관(추후 반환금액 확정시 이의제기 증빙자료로 필요)

③ 사용량(유상/무상) 시스템 입력(비고란에 무상 지원 내용 입력*)

* 무상지원 대상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 작성 必 (작성 예시: (5.1) 무상(1)/ 김**/ 311****/27호)

5. 분기별 정산 진행

- 사용량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청이 반환금액 초안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안내 → 담당기관에서 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부여 예정, 처방전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1차 정산은 5~6월 사용량에 대하여 7월 중 진행 예정(세부일정 추후 안내)